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6.09

14:00 ~ 16: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토론자 박찬록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차전경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창행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민윤기 |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차인순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문의 | 남인순 의원실 02-788-2202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요일 14:00-16: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더불어민주당)

Program

시 간	내 용	참 석 자
14:00~14:30	개 회 사	국회의원 권미혁·정춘숙·표창원
14:30~14:40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좌 장 :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14:40~16:00	토론	박찬록_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차전경_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창행_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민윤기_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송란희_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_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_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차인순_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16:00~16:30	종합토론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5월 25일 한낮에 부산 길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CCTV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행정입원 요청 ▲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담았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여성혐오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및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국민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특

정 성(性)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6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후 후속 토론회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으로 터져나온 여성들의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생존 증언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적대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왜 한 여성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명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대책마련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혐오문제와 젠더 불평등의 시급성을 미뤄두고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아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감금하고 관리한다는 대책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 등 차별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 측면만 다루는 것이며, 수많은 형태의 유무형의 차별과 폭력들을 비가시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범죄’대책만은 협소하며 폭넓고 다양한 차별금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젠더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점부터 출발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을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종,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및 혐오 등에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때문에 혐오 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논의가 촉발되었기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국가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 성평등 인권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처벌법’은 매년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 18년째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기에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최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정춘숙·표창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을 설명해주신 박찬록 법무부 보호법제과장님,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님,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토론해주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님,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이 진일보하고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회의원 남인순

인사말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지난 5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행동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상이 언제든 여성들에게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끊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불안과 고통을 지나치지 말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여전히 계속되는 여성대상 강력범죄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불안감도 수그러지기보다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풀지 않고, 어느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편견과 낙인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구조적인 배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한 사회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건강하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 자리를 통해 여성이 정말로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신 남인순, 정춘숙, 표창원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20대 국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9일

국회의원 권미혁

인사말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물결은 공감과 분노의 힘으로 커져갔고,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당해야 했던 공포와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대상화, 추행, 강간, 폭력 등에 대한 말하기’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에 대한 살해와 폭력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5월 25일 부산에서 길을 가던 여성 두 명이 아무 이유 없이 각목으로 폭행당했고, 30일에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여성이 살해당했으며, 6월 1일과 5일에 서울의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들이 괴한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남인순, 권미혁, 표창원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차별 문제로부터 기인한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 및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성 대상 범죄가 지속되자 정부는 △CCTV 확충 및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이 있는 개인의 일탈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특정 장소, 특정 사람으로 규정하는 듯하여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고, 조현증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키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정부가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 비율은 0.3%로 일반인구의 범죄율 3.6%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여성 대상 범죄의 책임을 정신질환자에게 전가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입니다.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보호수용제도’ 역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범죄자라 해도 선고된 형을 다 마친 뒤 다시 구금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강화한 것이며, 예방보다는 사건발생 이후 증거 확보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특히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공교육 안에 여성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사법기관과 경찰 대상 교육 안에도 여성의 인권 인식 변화를 위한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길 바라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여성, 아동, 소수자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성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법·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여성의전화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제 손으로 만들어낸 ‘스토킹범죄 관련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고,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토론자 여러분,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국회의원 정춘숙

인사말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지난달 28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늘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권미혁, 남인숙, 정춘숙 의원님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참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강력범죄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께서 불안에 떨고 계시고 강력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강력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역 흉기난동 사건, 섬마을에서 벌어진 교사 대상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여전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강력범죄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게, 응급대책 위주로 내놓다 보니 미봉책과 재탕에 불과하고,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오히려 배제하고 격리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거나 다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나 불안, 혹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과 법률의 인권보호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전조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회의원 표창원

축 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조차 없고,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 사건 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아울러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대한 분노의 증언 역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 사건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같은 여성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과 해법 마련이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의 상당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 대책의 핵심이 정신질환자의 관리·감독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 접

근하고 해결해야 할 여성혐오 범죄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있을 뿐 아니라,

- 조현병자를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대단히 폭력적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 여성 혐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에게 과연 성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불평등의 악순환은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은 바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혐오와 성불평등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 폭력과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국가상.사회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은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를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그리고 성평등 국회의 시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또한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효율적인 상시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민생치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나아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또한 희생당하지 않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오늘 이 자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종식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서울서대문갑) 우상호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2016. 6. 9. 법무부

1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강화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환경 개선 사업 추진

2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음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추진

-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

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
호도 내실화

-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
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
용제도 도입 추진

□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3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
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
준을 적극 적용

-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
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

4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

-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 추진

-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 스토킹 등 반복적 강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 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 「보드미」 개발 및 보급 추진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강화 대책

2016. 6. 8.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조기발견 강화

- (학교기반 조기 정신증 발굴) 조현병 등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 발굴·개입 체계 마련
 - 수가체계 개선, 학교기반 교육·홍보 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초기 개입을 위한 지원모형 개발
-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계) 방문보건서비스 등 가정방문시 정신건강 문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여부 심층 사정평가, 사례관리 및 의학적 개입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
- (알코올 고위험군 조기발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 강화
 - 특히 노숙인 시설과 지역 센터를 연계하여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

- (제도 시행방안 구체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마련·배포

※ 정신보건법 개정('17.5월 시행)으로 외래치료명령 절차 구체화, 비용부담근거 마련

- (약물복용 유도) 외래치료명령 시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을 장려하여 약물 미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 최소화

- (전담 치료지원팀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전담 치료지원팀을 통해 외래치료 대상자 외래치료, 투약 여부, 상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외래치료 또는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집행력 확보

□ 지역사회 지원 강화

- (사회복귀시설 확충)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독려

- (경찰 업무협조) 지역사회 내 경찰-정신건강증진센터 간 협

조체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문제 발생 시 개입 내실화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나 응급상황 발생시 정신 보건전문요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지원
 - (알코올 중독자 치료지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예방교육, 캠페인), ‘조기선별 및 단기개입(SBIRT)*’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강화
- ※ SBIRT: 선별(Screening), 단기개입(Brief Intervention), 집중 단기개입(Referral to Treatment), 치료 의뢰(Problematic addiction)
- 알코올 중독자와 신규 발견된 고위험군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가족단위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소관 대책

□ 양성평등 방송·온라인 환경 조성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 확대(3→5개) 및 구체화(방심위 협업, ‘16.7월 개정 예정)
- 특정 성(性)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실시 및 포털사이트와 자체 필터링 기준 재설정 협의
-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광고상’ 신설 추진

□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

- 청년층 대상 인식조사(5~6월) 및 대국민 양성평등 실태조사(9~10월) 실시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및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양성평등 사진 및 디자인 공모전 등 대국민 참여 캠페인 실시

□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인프라 지속 발굴·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아동 안전 취약시설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안전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발굴·개선

□ 폭력 피해 전국 실태점검 실시 등 피해자 지원정책 기반

구축

-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폭력 피해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예방정책 마련
 - 실태조사 시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양상 파악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제화 추진** ('16년)
 -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법제화 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경정 민윤기

1. 서론

최근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은 범죄학적으로 ‘혐오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방어력이 낮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5.2%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 피해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면 여성 피해자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전체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증대되었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유대감이 형성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서는 6월부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과 ‘집중 순찰활동’으로 구분되는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 추진 : 여성불안요인 해결

그동안 경찰의 범죄대응 패러다임이 ‘현장대응·검거’ 중심이었다면,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은 바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늘리거나 순찰횟수를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 취약장소와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경찰서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보다 수요자 중심의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한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스마트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이유 등을 수렴하고, 신고된 불안요소는 물적·인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을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요인별 특성에 맞게 '순찰 강화'부터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설 개선',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신변보호 요청 여성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1,000대 이상 추가 구매하여 보복범죄 우려 등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정신질환자는,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 요청 기준 등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 방치되는 등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영국·호주·일본 등의 진단·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금년 4월부터 시범운영하다가 6월에 전국적으로 신설한 조직으로, 범죄·인구사회학적·물리적 환경 등 범죄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한 후,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치안 컨설턴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 특별치안활동 전개 : 집중 순찰활동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 외에 전통

적인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문검색 등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 뿐만 아니라, 경찰관기동대·상설중대 등 순찰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 기회를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우려지역을 반복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형사인력을 동원하여, 여성 영세상인에 대한 갈취·업무방해 등 동네조폭과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노래방 등에 대한 범죄, 상대방을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3. 범죄예방기반 조성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예방·참여 치안 패러다임 정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의 주요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앞에서 언급한 ‘범죄예방진단 및 강화구역 관리’ 외에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치안주체임을 명시하여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나 범죄예방정보를

요청하고 나아가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예방·참여치안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경찰의 입장에서 그만큼 절실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민간기업·사회단체 등을 범죄안전 우수단체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 제 구성원들이 범죄예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4. 결론

범죄예방 분야는 경찰 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의 불안요소는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도 치안주체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지역사회 참여 등 범죄예방적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범죄예방이 가능합니다. 범죄예방진단팀을 비롯한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이 좋은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에 예방·참여 패러다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왜, 유독,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지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우리 사회가 여성대상 범죄를 다루는 방식

1) '동기 없는 범죄'는 왜 강조되는가

- 정부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미 그것이 소위 '묻지마 범죄'라 할지라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묻지마 범죄', 혹은 '정신질환자'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시키고 있음.
- 정부종합대책 또한 추진배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기 없는 살인·상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을 들고 있음. 그렇다면 초점은 소위 '동기 없는' 범죄가 왜 유독 여성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지에 맞춰줘야 함.

2) '동기 있는' 여성대상 범죄

- 여성대상 범죄는 동기가 없지 않음. 다만, 그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문제. 특히,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가해자의 변명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여성살인 동기(변명)는 다음과 같음. "헤어지자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의심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찾김에", "술에 취해" 등. 이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남편, 전남편, 애인, 전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임.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경우,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등.

3) 여성의 범죄피해 실태

- 단순 성별 분리를 넘어선, 여성 대상 범죄, 여성 피해 범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국가통계 부재.
-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 84.7%는 여성(2015 범죄분석)
-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 실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통계 부재한 상황.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분노의 게이지’ 2009년부터 2015까지 누계>

관계	범죄 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657
	살인 미수	7	54	19	49	75	95	95	394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051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16	16	14	30	23	131
	살인 미수	미파 악	10	19	19	16	27	27	118
소계		16	26	35	35	30	57	50	249
합계		93	154	119	204	228	266	236	1300

- 2014년 살인사건으로 숨진 357명 중 187명이 여성(2015 범죄분석). 한국여성의전화 언론보도 분석통계와 비교했을 때, 여성살해는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추정됨.

4) 소결

- 여성대상 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시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음. 피해자가 남편 혹은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거나, ‘그 곳에 갔기’ 때문으로, 피해자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거나,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으로.
- 이번 정부종합대책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대상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여성대상 범죄 실태 파악의 실패 혹은 의지 없음, 범죄자의 범행동기(변명)에 근거한 대책은 피해자의 범죄 유발 원인을 제거하거나(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 것 등)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또 다른 인권침해인) ‘잠재적 범죄자’ 제재로 국한될 수밖에 없음.

2. 정부종합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은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골자로 함.
-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임. 여성대상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함. 이는 곧, 가부장적 권력관계, 차별적인 문화규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임.
- 따라서 종합대책의 1순위로 환경개선을 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음. 골목길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비상벨 설치, 범죄안전지도 작성·배포, CCTV 추가설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대상범위 확대 등은 ‘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여성범죄는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발생한다’, ‘여성이 조심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다’ 등의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강화함. 또한, CCTV 확대, 비상벨 설치 등은 범죄 예방보다는 신고와 범인 검거 등 사후적 대응에 효과적인 조치들임. 여성 대상 범죄예방에 있어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 구축은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정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또한 여성들이 주로 폭력 범죄를 당하는 가정은 애초에 제외되어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밤낮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함. 가해자 또한 낯선 사람,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특정 사람에 국한되지 않음. 오히려 이들은 전체 여성폭력, 여성대상범죄에 있어 일부에 지나지 않음(정신장애 범죄자 비율 0.4%,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포함, 2014 범죄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발견, 행정입원, 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 시행,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등을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문제의 본

질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방패삼아 호도하는 것인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임. 많은 여성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저조한 신고율만 보아도 명확함.
- 결론적으로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에 비판받아왔던 ‘여성안전정책’들을 짜깁기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강화를 내세우며,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끼워 넣어 구색을 갖춘 수준임.
-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정책들을 핵심으로 배치했다는 것임. 진단이 틀렸기에 대책도 틀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만 강화하는 꼴이 되었음.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또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 따라서 여성 대상 범죄의 발생 장소와 상황을 특정하고, 특정한 사람을 잠재적 가해자로 선별하는 것은 여성폭력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여성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또 다른 성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행동규범을 강화하기 쉬움.
-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그 결과임.**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음. 따라서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대책은 성평등정책에서 출발해야 함.

1) 강력한 성평등정책 총괄기구 신설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정부 부처간 여성정책공조와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었음.
- 이후 2003년 한국 여성정책전략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확립하면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분명히 하였음. 기존의 부처별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더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여 여성부의 여성정책조정기능을 이끌어 나감.
- 그러나 이러한 조정기능은 2005년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 등 집행업무를 가져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여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과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 기능 상실로 사실상 정책조율기능은 소멸됨.

- 이에 국가의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2) 여성폭력근절정책 총괄 기구 설치

- 여성폭력근절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 적극적인 예방정책,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효과적임. 그러나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예방교육은 교육부 등으로 주무 부서를 두고 있음. 부처 간 협력 미비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폭력 정책 집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부처별 소견이 상이한 관계로 혼선을 빚기도 함. 이에, 여성폭력근절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또한 필요함.

3)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 범죄 통계는 범죄 예방의 기초적인 자료임. 그러나 현재 범죄 통계에서는 단순 성별분리만 되어 있을 뿐, 범죄 발생 상황, 피·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 등은 알 수가 없음. 따라서 통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국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서 신뢰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자 함. 그러나 범죄예방과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폭력/여성대상범죄를 특화하는 별도의 통계가 필요함

4) 성평등과 인권을 공교육에서

- 현재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시간을 배정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2월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각의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 개별 강사의 인식 및 전문성의 정도가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성평등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학습되어야 효과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된 교육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일상에서의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5)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 여성폭력 근절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로 줄어들었음.

6)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

-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각의 해당 상담소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중 한쪽으로만 정의하기 힘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함.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지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 유형 및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개편 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은 그 출발부터 다름. 그러나 지원목적의 본질적 차이와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에 따른 차등 지원,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으로 인한 피해 등 부가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예산의 확보나 운영에 있어 불안정함. 이에 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해야 함.

7) 입법과제-관련 법률 일제 정비

(1)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 우리나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국가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음.

-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폭넓은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함. 전술한 여성폭력근절 정책 총괄 기구 설치,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독자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역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당면과제임.

(3) 스토킹범죄처벌법(안) 제정

-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토킹 범죄에서 대해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만 지속적으로 되었을 뿐, 논의의 진전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피해자 법익 보호에 실패하였음.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속히 필요

(4) 기존 법률 정비

-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 여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 성폭력사건 사법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자가 순식간에 무고 피의자로 뒤바뀌는 사례들에 대해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등 개선

8) 일상의 성평등 정착 노력 필요

- 성차별, 여성비하적 미디어 제재
- 공익캠페인 실시 등

묻지마 범죄의 실증적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이수정

묻지마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범죄분석:

- 현실불만형 우발적 범죄 2010년 197,209에서 2012년 398,913건
- ‘우발적 살인’ 혐의자는 2000년 306명에서 2005년 319명, 2010년 465명으로 증가
- ‘우발적 방화’ 도 2000년 347명, 2005년 427명, 2010년 583명으로 증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연구

- 대검찰청(2013): 55건 대상 87% 무직, 35% 정신장애, 67% 길거리 공공장소, 76% 전과자
- 김현철(2013) 광주지검 검사: 2010년 8건에서 2012년 102건으로 묻지마 범죄 증가. 이중 50-75% 반사회적 인격장애
- 서울지방법경찰청(2012): 20건 묻지마 범죄 분석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정신장애군 분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연구

범행적 공통특성

: 범죄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 피해자 선택

대안 모색의 어려움

: 불명확하거나 내적 욕구 분출 욕구일 경우,
범인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적 문제 자각 못함 &
묻지마 혹은 무동기 범죄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일본의 도리마 살인의 특성

도리마 살인

- : 행인 등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범죄로 확고한 동기 없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 사용, 상해
- : 2001~2010(10년간)간 총 67건(미수 포함) 발생

우스이 마후미(碓井眞史) 교수

- : 이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고독이 있다.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그 마지막에 인생의 대역전을 생각한다.
- : 자신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파괴, 최후에 큰 일을 일으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미국의 총기난사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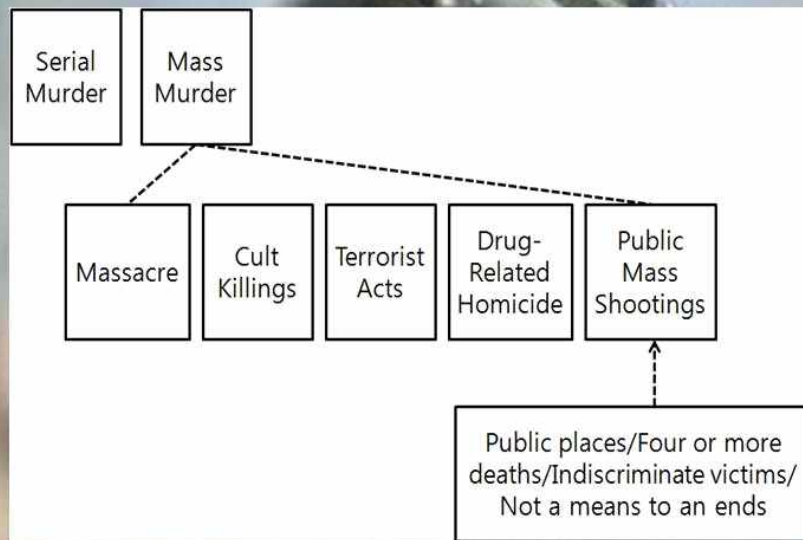
1986년 8월: Pat Sherrill (postal worker)

2001년 4월: Pierre Lebrun(OC Transpo)

2004년 7월: Elijah Brown(meatpacking plant)

미국의 경우 연간 111,000 건의 직장 내 폭력
및 750~1,000 건의 불자마 살인사건 발생

미국의 총기난사사건: 2012년도 미국 의회 CRS 보고서의 정의



미국 총기난사범의 특징

- 타인과의 갈등 시 **의사소통 상의 문제**
- 참슬것 결여
- **과장된 자존감**
- **자기도취와 주변에 대한 과도한 주의탐색행위**
- 비판 수용능력 결여
- 거절에 대한 과도한 민감도 **파해의식**
- 마음 속 앙금, **불만 지속**
- 부적절한 숨머감각
- **심한 기분 변화**
-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 티비나 영화 속 **폭력행위에 대한 동경**
- **분도조절 실패**
- **홍기에 대한 집착**
- **외톨이거나 친구 거의 없음**
- **왕따 등 피해경험**
- 허무주의

원인기제 1: 피해의식

- 자신의 잘못이 타인 혹은 직장에 문제가 있다는 **피해의식**
- 의심 증가, **불안 우울** 장애 동반
- 사회적인 관계 소원 - **외톨이** 생활
- 은밀한 사생활
- 피해자와 비면식

원인기제 2: 반사회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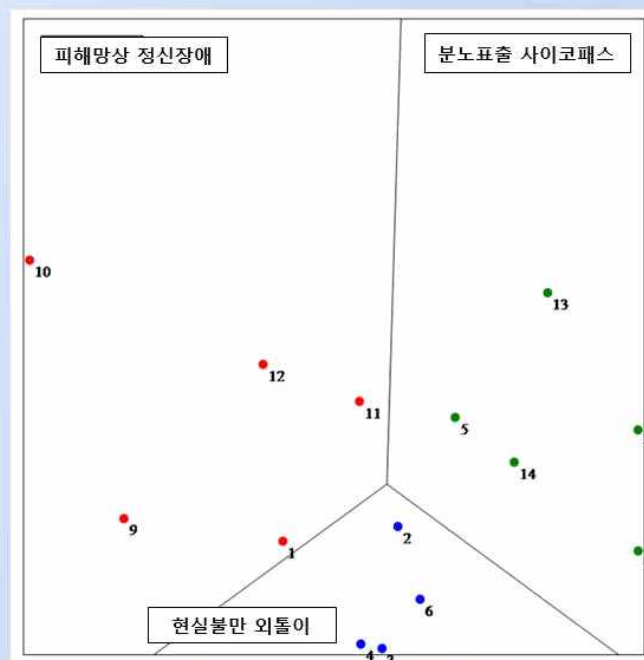
- 타인에 대한 극도의 냉담함
- 대뇌피질의 정서처리 기능상의 손상
-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결여
- 사이코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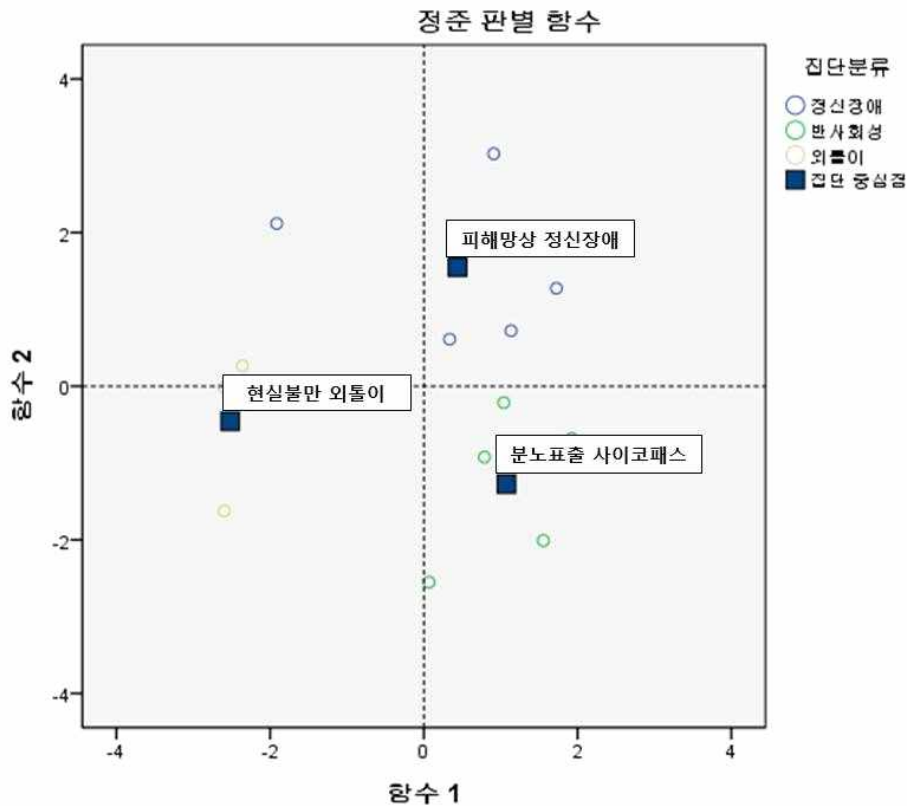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

2012년도 대검 연구에 참여하였던 55명 중 면담과 자료열람, 및 심리평가에 동의해주었던 18명의 묻지마 범죄자

- (1) 지능검사: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K-WAIS-IV)
- (2) 인지신경심리검사: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 (3) 성격검사: 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2(MMPI-2)
- (4) 정서인식력: 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ERT-R)
- (5) 사이코패시(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 (6)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General; KORAS-G)
- (7) 알코올 의존증 평가도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HUDAP 분석 결과 산출된 영역별 변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 모색

-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 상 세 가지 하위유형 존재
- 단순히 경제적 곤란, 사회적 불만만으로 발생하는 것 아님
- 차별화된 대응방안 필요
- 정신장애 유형(정신분열증)에 대하여서는 의료지원 필요-일본의 의료관찰제도 참고
 - ❖ 2007년 1965977명 중 5726명(.29%), 2008년 2189452명 중 7140명(.33%), 2009년 2168185명 중 7051명(.33%), 2010년 1917300명 중 5391명(.28%), 2011년 1902720명 중 5379명(.28%)
- 외톨이 유형에 대하여서는 취업훈련 필요-일본의 히키코모리 예방법 참고
- 사이코패스적 유형(조발비행, 누범자)에 대하여서는 보안 처분 필요-영국의 MAPPA 제도 참고
 - ❖ 김일곤의 여성 납치살해 사건 참조(1명 사망/사체손괴/방화), 갱생보호 관련 논의

문지마 범죄에 관한 정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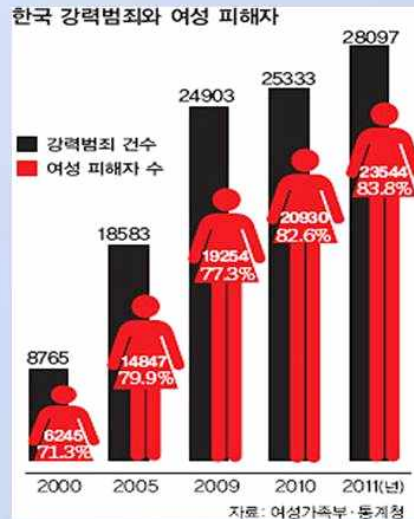
2016년도 5월 17일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발생 이후
6월 1일 정부당국 발표 대책

- 범죄 취약지역에 CCTV 부착
- 공용 화장실을 분리 화장실로 리모델링
- 정신질환자나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
'인신 보호관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등 형기를 마친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 '보호수
용제도'도입
-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최고형 구형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알려진 범죄

- 5월 25일 부산 조현병 환자의 문지마 폭행
- 5월 26일 대림역 흥기난동 - 전과 16범 출소 6개월 만에
- 5월 29일 수락산 문지마 살인 - 여성 강도살인 징역 15년 후
출소 4개월 만에 여성 등산객 살해
- 5월 22일 여교사 집단 성폭행 - 2009년 성폭력 전력 있던 자

여성 대상 범죄 실태: 강력범죄



죄종별(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소계	1,88	8	1,426	462	1,786	1,283	503	1,729	1,246	483	1,505	1,132	373	1,551	1,179	372	1,408	1,040	368	538	385
살인	499	244	255	494	239	261	496	248	248	422	224	198	392	204	188	385	192	193	184	91	93
강도	67	36	31	65	31	34	69	22	47	45	22	23	31	16	15	45	22	23	22	8	14
강간·추행	4	-	4	2	-	2	7	-	7	1	-	1	10	1	9	10	4	6	2	-	2
폭행	123	99	24	108	78	30	87	61	26	76	54	22	74	57	17	79	61	18	40	33	7
상해	131	87	44	123	84	39	122	91	31	82	60	22	128	83	45	89	67	22	29	23	6
폭처법	-	-	-	61	40	21	5	3	2	6	5	1	13	10	3	15	6	9	1	1	-

죄종별	2011			2012			2013			2014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사망	계	남자
살인기수	431	209	222	435	216	219	352	170	182	377	184	193
강도	39	19	20	18	14	4	25	13	12	22	8	14
강간·추행	4	-	4	13	-	13	8	0	0	1	-	1
폭행	89	75	14	94	79	15	108	83	25	82	55	27
상해	91	63	28	95	65	30	95	58	37	68	46	22
과실치사상	433	394	39	1,315	1,152	163	929	825	104	1,216	1,028	188

여성 대상 범죄 실태: 살인

	2011				2012				2013				2014			
	계	남자	여자	불상	계	남자	여자	불상	계	남자	여자	불상	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기수	427	202	223	2	411	192	218	1	342	162	180	-	372	180	191	1



2008 UN 마약범죄사무소

여성 대상 범죄 실태: 성폭력

〈표 8〉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5년~2014년)

(단위: 건(%))

연도	강간 ⁹	강제추행	강간통	강간통 살인/치사	강간통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통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자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일탈 장소 후행	계
2005	2,127 [18.4]	4,089 [35.4]	1,894 [16.4]	10 [0.1]	1,766 [15.3]	302 [2.6]	341 [3.0]	-	164 [1.4]	858 [7.4]	11,551
2006	2,510 [17.6]	4,984 [34.9]	2,895 [20.3]	22 [0.2]	1,874 [13.1]	306 [2.1]	517 [3.6]	-	195 [1.4]	974 [6.8]	14,277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3.9]	-	240 [1.7]	939 [6.5]	14,344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378 [2.3]	854 [5.3]	16,129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여성 대상 범죄 실태: 가정폭력



안산 인질극 김상훈 사건

'장시간 상습 폭력'...신혼 꿈 날아가고 하늘로 간 여인

제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동거남이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복강내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저녁 7~8시부터 사건 당일인 4일 새벽 3시까지 유씨는 동거녀 오씨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10일께 유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는 동거남 유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싸움이 나 소란스럽다는 주민 신고가 올해 들어 무려 10건이 접수됐다. 관할 경찰 지구대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했으나 가족간 경미한 시비로 보고 그때마다 유씨를 훈방 조치했다. 당시 주민 신고로 유씨의 가정폭력 행위가 드러났으나 동거녀 오씨가 유씨와 조만간 결혼할 것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유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구속 입건했다. 동거녀 오씨의 의사에 따라 경찰은 유씨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하지 못했다. 다만 유씨는 지난 달 20일 약식재판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가정보호 전문기관 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다. 유씨에 대한 가정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은 이달 일정이 확정돼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1월 사건 이후 경찰도 매달 1차례씩 방문 상담하거나 수차례 전화 상담을 벌였다. 그때마다 오씨는 "술을 마시지만 않으면 자상한 남편"이라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지기 전날인 3일 진행된 경찰의 방문 상담에서도 오씨는 "시댁이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룸을 구해줘 기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3월 한 달간 도내 한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폭력성을 완전히 치료받지 못했다. 오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폭행이 있었던 4일 당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이번 사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 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심한 복통 등을 호소, 유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0분께 숨졌다.

여성 대상 범죄 맞춤형 대책 보강 필요

- 여성의 생명 손실의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 여성에 대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보다는 가정폭력 등 만성화된 폭력범죄 훨씬 많음
- 여성의 신변 안전 도모할 제도 법안 마련: 스토킹 방지법 도입 필요
- 4대 강력범죄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인 성범죄 방지 대책 필요: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맞는 엄벌주의 필요
- 랜덤채팅으로 인한 아동성범죄 방지 대책 필요: 아동유인방지법 도입
-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다 개별화된 집중 관리 필요(재범률 절대 낮지 않음): 성범죄자 포함 우범자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 상습범 출소 시 성인에게도 보호관찰 추가하는 제도 필요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

- **문제의 초점이 없다.** :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없는 범죄?, 기존정책강화?
- **깊은 고민이 없다.** : 각 부처가 이미 시행중인 것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이거나 제19대 국회에 입법이 불발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사업 끼워 넣기로 보이는 대책도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여성표적살해에서부터 데이트폭력에 이르기까지 왜 다양한 여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질문이 없음.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명확할 수 없음.
- **지속가능성이 없다** : 제한된 인력과 자원에 기반한 정책집행방식을 고려하면 현 종합대책은 시설 몇 개를 늘리거나, 몇 개의 앱을 개발하거나, 집중단속, 강력처벌과 같은 일시적 대책으로 흘러갈 것이고 문제는 반복될 우려.

(2016. 6.1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 :보도자료)

-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CCTV 확충, 공중화장실법 시행령개정, 집중신고기간, 강력범죄, 여성 갈취, 데이트폭력 사법 등 집중단속)
-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학교기반 조기발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재추진, 외래치료명령제 내실화(2017년 5월 시행),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독려)
-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강화
(치료명령제도 시행(2016.12.2.), 치료감호기간 연장 적극 활용, 보호수용제도 재추진,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스템 추진,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가석방 심사 강화)
-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2016.3 형사처벌 기준 적용, 소시오 패스 기소유예시 치료조건 부과, 데이트 폭력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상습폭력 구속수사)
-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국선번호사 2016년 추가,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스마트 기기 신변보호 심리치료 개발 보급, 스마일센터·해바라기 센터 확대 설치) ◦ 양성평등문화 조성 (방송심의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조항 확대,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포함 권고, 다중이용시설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불평등 제도개선)

□ 몇 가지 의문 또는 생각

-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 동안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이 발전시켜온 3P(예방(Prevention)-보호(Protection)-처벌(Prosecution)) 체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6월 1일 정부 대책은 처벌, 보호, 예방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균형 있게 반영되지도 못했음.

(보도자료 :주요 제도 및 정책 관련 부처 - 법무부 대책이 10건, 복지부 4건, 경찰청 2, 여성가족부 1건)

-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중 <심리치유 앱 보드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하겠다는 대책의 타당성에 의문.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법제화 추진 ” 대책의 경우, 이는 법무부 대책 보고에서 나와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
- 대국민 참여 캠페인 모호함. 어떤 캠페인? 그 내용은 무어라고 생각하는지?

□ 법제에 있어 다양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적 고민이 필요함.

(현장의 울림)

“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 (==>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 방향

강남역의 포스트 잇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여성폭력현상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불안, 즉 안전하지 않음의 문제는 각종 대책에 끼워넣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의 중심 해결과제가 되어야 함.

■ 관련 입법 논의들

여성폭력과 관련한 형사 처벌 규정의 형법체계 내 일원화, 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¹⁾, 성평등인권교육 강화 또는 법 제정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임.

■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해야할 근본적 문제는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념 확장.

여성폭력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 사건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관계 하에서 연속체(Continuum)로 존재함. 즉 여성에 대한 편견, 비하, 희롱, 학대, 폭력, 살해는 연관성을 갖는 문제들임.

이로 인한 여성의 불안과 공포는 다수 여성들의 공통적 경험이며 여성들의 행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재생산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임.

1) 송란희,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당선자 권미혁, 정춘숙, 표창원 2016.5 26

또 이러한 여성폭력은 계층, 연령, 이주, 장애 등의 제반 사회적 문제들과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성격의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의 입법이 가능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의 검토와 피해자 보호 정책 입법화 논의 필요

현행법령은 여성폭력의 문제를 사건별로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하여만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하여 일부 제재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 밖에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 표현과 관련 범죄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은 논의 중에 있거나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되어 오고 있는 상태임.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강한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임. 실제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폭, 성폭, 성매매 피해 이외의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가시화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윤덕경 외(201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25-74 중 관련내용 발췌(차인순 집필부분)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가. 범위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초한(gender-based) 폭력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또는 자유의 박탈”을 가리킨다.²⁾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초한 폭력 행위로서 일반 폭력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여아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형태뿐 아니라 폭력이 결과적으로 남성의 권력(men's power over women)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자 소유물로서의 여성이라는 젠더에 기반한 인간의 물리적, 상징적 위치가 재확인”되며 “지배와 통제로서 남성(성)의 권력이 재확인되고 남성성/여성성(성별 간)의 위계적 질서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³⁾ 즉, 성별에 기초한 폭력으로서 여성폭력은 남성/남성적인 것의 여성/여성적인 것에 대한 공격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여성적인 것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를 통해 남성적 권력을 재생산하는 특별한 폭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2008)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폭력을 보고 있는데 여성폭력은 여성인권의 침해이며, 삶과 안전에 대한 권리, 교육, 일, 주거, 공공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여성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성의 종속,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힘의 분배를 영구화시키며 또 여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인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발을 저해하

2)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제1조. 장복희(2005),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5권제3호, pp.76-77.

여성폭력 문제를 여성의 권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3년 UN의 비엔나 선언으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UN인권위원회에 의한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여성폭력 철폐 선언의 채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1993년 제48차 유엔 총회에서 여성폭력 철폐선언을 채택하였다.

3) 이나영(2014), “젠더 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의 지향점”,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사회를 향한 길찾기>,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14. 9, p.27.

며 난민발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⁴⁾ 여성폭력은 특정문화, 지역 또는 국가나 한 사회의 특정 여성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형태와 여성의 개인적인 폭력 피해의 경험은 민족, 계층, 연령, 성적 성향, 장애, 국적, 종교와 같은 요인에 의해 구체화 된다.⁵⁾ 여성폭력은 4가지 영역 즉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무력분쟁 하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자 폭력과 살해, 성폭력, 성희롱, (강제) 성매매, 성 착취 또는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육체적 공격, 강간, 스토킹 등), 그 밖의 사회문화적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고립, 감금, 타인접촉제한 등이며, 특별히 무력분쟁 하에서는 여성에게 이 모든 폭력이 종합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⁶⁾

이상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볼 때 현재 우리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폭력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대표적인 여성폭력 관련 법률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3법이 있으며, 이 3법은 가해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예방-보호-처벌의 3P 구조에 입각해 있다. 이 법들에서 피해자 보호의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보호법에서 예방을 위한 정책들과 피해자의 일반적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다루어지며, 처벌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처벌법	보호법
가정 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P : 예방(Prevention)-보호(Protection)-처벌(Prosecution)

이러한 여성폭력 3법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아동·청소년, 장애,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로도 관련 규정이 있다. 또 4번

4) 여성부 역(2008), 「여성폭력 종식-담론에서 행동으로」, 유엔사무총장보고서, p.77.

5) 위의 책 p.3

6) 위의 책, pp 59-77.

째 여성폭력 문제로 볼 수 있는 성희롱 규정의 경우, 입법적으로는 성차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으나⁷⁾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성차별의 범주에서 독립시켜 규정한 별도의 법안이 제출되는 등⁸⁾ 논의 지형이 변동 중에 있다. 그 밖에 인신매매, 스토킹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규정들이 포함된 법률들이 있다.

5. 소결

나. 추가적 고려사항

1) 정의 혹은 범위의 확장

여성 폭력의 양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젠더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성적 인신매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어온 데이트(성)폭력, 그리고 확장일로에 있는 ICT 기반의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고려할 때, 기본법안은 소극적으로 3개의 방지법의 기계적 통합에 머물기 보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포괄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초 시민사회가 성폭력 방지법안을 구상할 때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하며 성적 폭력 뿐 아니라 이런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여성폭력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⁹⁾

여성폭력은 이러한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여성 폭력 문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을 기본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폭력 관련 인신매매 규정, 무력 분쟁 하에서의 여성폭력 방지 원칙 등의 포함 여부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8)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9) 정춘숙(2009), “가정폭력방지법 제·개정과 여성운동”,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 김은경 외, 한울, p.7.

2) 피해자 보호 원칙의 정립

피해자 보호라는 법률적 용어를 쓰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은 피해자를 배려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경(2012)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권리의 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위치 및 입장을 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¹⁰⁾ 관련하여 이미경은 ① 피해자 진술의 선택권(공개재판, 비공개재판의 피해자 선택) ② 정보권 보장 (피해자 권리 고지, 가해자 권리고지 및 2차 가해시 불이익, 서면교부 등) ③ 피해자인격권과 신변보호권, ④ 피해보상권 보장, ⑤ 조력을 받을 권리 ⑥ 임신 중단권 등의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세부규정과 수사실무와 재판과정, 피해자 지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법/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비록 처벌법 상의 규정이지는 않지만 기본법에서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그 기본원칙을 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특별히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차 피해란 범죄 피해가 일어난 뒤, 주변인이나 수사·재판, 보도·진료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¹¹⁾,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정책전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정책의 전달체계가 각각의 법에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폭력 모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 성매매중

10) 이미경(2012), “젠더폭력 관련법의 최근 변화와 쟁점”,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제4권 제1호, pp.14-15.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위음(2011), 「성폭력 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p.178.

양지원센터는 있으나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중앙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담해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정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규정은 있으나, 가정폭력과 성매매예방교육지원기관은 없는 점, 그리고 긴급전화센터 1366이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을 긴급지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정합적이라 생각된다.

4) 정보인권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 정비 필요

복지의 이중 수급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도화된 사회복지전산망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개별 보호/지원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문제는 해당 시설과 관련 단체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관리번호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일반 복지 수급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최소한의 안정과 치료에 필요한 일정기간 (예를 들어 3개월~6개월) 동안은 복지 수급 대상자가 아닌 피해에 대한 긴급 보호 대상으로 보아, 복지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보호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논의하고 그 근거 조항 마련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